학술기획 한국언론의 위상과 현실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얼룩진 言路

〈 2 〉 방송구조 개편과 언론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율·독립·공정성 무시한 일방적 방송구조 개편

정부로부터의 언론자유 참된 민주주의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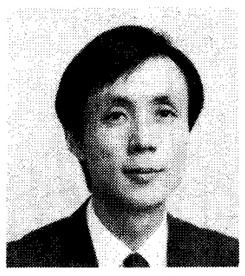

한 균 태
〈 정경대교수·신문방송학 〉

I. 머리말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나타난 6.29선언은 우리의 언론모습을 크게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난 80년 7,8월의 언론인 강제해직과 11월의 언론통폐합이라는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언론탄압조치에 이어 제정된 언론탄압장치였던 언론기본법이 그해 11월 폐기되었다. 그대신 신문과 잡지의 발행의 자유를 허용한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1960년 4.19직후 제2공화국 정부가 발행의 자유를 제한없이 보장했던 때로부터 실로 27년 만이었다.

이같은 자유로운 언론환경으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인쇄매체의 급속한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며, 또한 외견상으로는 6공화국 출범이후 언론자유가 크게 신장되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언론계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외형적 변화현상은 한국언론이 과거 권위주의적 구조로부터 탈바꿈내지 민주적 구조로 발전하는 징조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은 민주적 언론구조의 조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과연 민주적 언론정책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국언론이 민주언론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를 의미하는 외적인 자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적 자유가 언론민주화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경우 우리나라의 언론이 본질적으로 외적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II. 방송구조개편안

임시국회 개원5일을 앞둔 6월 14일 민영방송의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구조개편계획〉이 발표되고, 꼭 한달 만인 7월14일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방송관련 3개 수정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안을 얼핏보면 나름대로의 논리와 명분을 띄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정부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정치에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에 대한 폭넓은 여론수렴의 절차가 전혀 무시된채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민주정치란 쉽게 말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정부라면 어떠한 정책적 결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구상이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필수적임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 특히 요즘과 같이 계층간 계급간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상황하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폭넓은 여론수렴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결국 무리없이 합리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들의 정신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안은 우선적으로 처리과정상의 하자로 인해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결여돼 그 타당성과 효율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전반적인 사회변혁의 물결과 함께 언론민주화가 시대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방송민주화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많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방송정책 전반에 관한 최고정책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철저히 국민적 대표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이다. 방송위원회의 올바른 위상정립이야말로 방송의 중요한 이념인 공공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관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 단지 '공영이냐 민영이냐'에 대한 계속된 공방전으로 인해 정부의 수중으로 넘어간 위원구성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방송법개정을 통해 방송위원회는 종전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으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명예직으로 운영토록 했다. 위원의 구성방식은 종전과 같이 행정, 입법, 사법부에서 추천토록 했으나 입법부의 경우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3당이 통합된 현 상태에서 의석비율로 추천하게 되면 여당 몫이 커질 것이며, 더욱이 삼권분립이 안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체위원의 목소리는 친정부쪽으로 획일화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 뻔하다.

방송위원회의 구성방식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위원들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재 명색뿐인 공영방송사가 방송의 전제가 되어야 할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현하기 더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가 KBS의 이사 12명 전원과 MBC를 관장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10명중 6명에 대한 선임권을 갖는다는 것은 양 방송사의 사장을 여권인사 가운데 선출하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을 사장으로 앉혀 방송을 손쉽게 통제하자는 속셈이 명백해진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조의 방송민주화운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게다가 개정된 방송법은 현재 방송위원회가 갖고 있는 방송의 운영, 편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심의결정권을 없애는 대신 방송국의 장은 〈방송편성이나 인사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규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 조항은 따지고 보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겉으로는 방송사의 자율권을 한층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종사자들의 편성, 제작, 편집의 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조항은 여권인사로 선임된 사장 개인을 비롯한 경영진이 방송의 편성권과 인사권을 전횡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사실상 노사단체협약을 무효화하여 정부의 통제를 용이할 수 있게 한 반면 노조의 방송민주화운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얘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기존 공영방송사가 진정한 공익방송으로 전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 졌다.

이밖에 공보처의 통제하에 있는 방송광고공사로 공익자금심의 결정권을 이전시킨 조치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익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골고른 혜택을 결정할 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관리위원회가 친정부 인물(방송위원장, 문화진흥예술원장, 공보처장관이 추천하는 각각 3명)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공익자금배분의 공정성과 공평성의 실현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는 것이다. 결국 종래의 폐단으로 지적된 정부의 입김에 의한 공익자금의 자의적 집행이나 남용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기란 실상 어려워졌다.

한마디로 민주적 방송구조의 토대를 결정할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이럴지언데 KBS와 MBC 양 공영방송사의 미래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방송구조개편안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민방문제 또한 그렇다. 민방신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상을 통해 세세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현 단계에서 현실 여건이나 국민이익의 측면에서 실제로 적절한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이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원격교육이 주기능이 되어야 할 교육방송국의 경우도 문교부의 산하에 들어간 것 부터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 독립성, 자율성 등 관리운영의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시 된다.

결론적으로 방송은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이뤄진 이번 방송구조개편안은 보다 더 충분하고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방송의 이념인 공공성, 독립성, 공정성을 구현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방송정책 및 방송제도에 의해 대체되어야 마땅하다.

III. 언론관계법

80년대 언론의 위상을 규정하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1980년 12월26일 관계국회였던 입법회의를 통과, 12월31일 공포·발표된 언론기본법(언기법)의 제정과 그 시행이다. 87년 11월10일 폐지될 때까지 언론의 자유보다 공적 책임을 강조했고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했던 언기법은 언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 법의 위력은 실제적용보다는 초강경의 협박용으로 더 커다란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된다. 그 주된 이유는 문공부장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언론사의 폐간을 명할 수 있는 전횡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기법하의 언론은 스스로 엄격한 자기검열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 검열기관에 의한 보도와 논평의 적합성여부를 매일매일 심사받아야 했다. 이외에도 언론표현물에 대한 압수규정 등 숱한 독소조항을 두고 있는 언기법은 '보도지침'과 함께 80년대 언론을 암흑기로 몰아넣었다. 따라서 5공시절의 언론은 본래의 사명과 역할보다는 어떻게 하면 폐간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신군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나 하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제도언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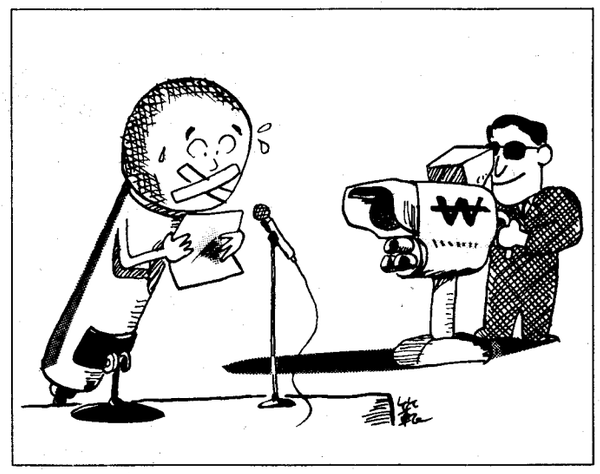

이처럼 언론을 철저하게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던 언기법은 87년 6·29선언 이후 사회 각 부문에 불어닥친 민주화, 자유화, 자율화의 바람에 따라 새로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언론환경의 전환에 힘입어 언론통폐합때 폐간된 신문과 잡지 등의 복간과 신규 언론기관의 설립이 활발해졌으며, 이에따라 다양한 종류의신문과 잡지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언론활성화의 바람은 정부의 언론정책의 변화에 힘입은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외면적인 언론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이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유나 독립을 쟁취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언론이 민주언론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외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권위주의적 언론구조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기간행물법을 보게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과거 언기법에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발행기준, 등록의무, 결격사유, 등록취소 청구 및 발행 정지명령규정 등의 언론규제의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등록요건의 시설기준 조항은 사실상 허가제나 다름없는 언론규제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조항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심사와 주의주장을 대변할 수 있으며 민주적 참여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소신문(small media)이나 지역신문의 출현을 사실상 억제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도 특정 의견, 주장, 사상, 이념이나 권리를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국민 누구도 그들의 주장이나 이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표현수단이 매체를 소유, 운영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른바 민주적 참여 미디어제도의 길이 열려야 비로서 참여적 민주주의 정치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언론자유를 치명적으로 제한하는 법률로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모독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경범죄 처벌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은 민주사회에서 마땅히 개정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같은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이 그대로 존속하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행정적 통제나 법외적 통제가 계속되는 한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과제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참된 언론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IV. 맺음말

결론부터 얘기하면 먼저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언론정책의 실행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발상이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나라의 언론정책은 구속적 기능, 조정적 기능, 조성적 기능, 참여적 기능 등 네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앞서 드러났듯이 우리 정부의 언론정책은 아직도 구속적기능과 참여적 기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6공화국출범이후 정부의 조성적 혹은 조정적 기능이 활발해 졌다고는 하나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언론의 창달을 위하기 보다는 구속적 기능이나 참여적 기능으로서 언론의 통제나 간섭을 행하기 위한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타당한 말일게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자유롭고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부의 구속적 기능과 참여적 기능이 배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언론이 정부로부터 명실공히 자유롭고 독립되어야만 사회적 변혁기에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적 사명과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 언론구조가 안고 있는 비민주적 요소, 전근대적 요소,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여 민주사회에 걸맞는 언론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정적 기능과 조성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언론정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초석은 언론자유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歲時錄

하나님도 반대하는 성 차별

일하는 여성(Working Girl)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이나 영화는 많이 발표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주인공들은 한가지 면에서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발견할수 있을 것이다. 비근한 예로 몇가지 들춰보면 지금은 영화화돼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신달자의 소설 '물위를 걷는 여자'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서른살이 넘도록 결혼을 안한 독신녀로 친구의 가정적인 위치를 부러워한다. 또한 요즘 새로 시작된 MBC의 아침드라마에 등장하는 산부인과의사역시 현재는 이혼한 상태로 결국엔, 딸한테마저 '일밖에 모르는 매정한 엄마'로 묘사되고 있다.

굳이 예전에 발표됐던 작품을 다시 들추어내지 않더라도 '꽤 진보됐고 개방됐다'는 요즘 시대에 여성소설의 수준이 왜 한결같이 같은 맥락으로 여성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일까? 어쩐지 세시봉子는 소설이든 드라마든 문학이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했을때 요즘의 세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것들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굳히기가 얼마나 힘든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며 오히려 세시봉子는 역경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여성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세시봉子 이토록 장구하게 여성의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늘어놓는것은 해마다 대입재수생 못지않은 취업재수생을 양성해내는 우리의 현실속에서 성차별과 또 한번 외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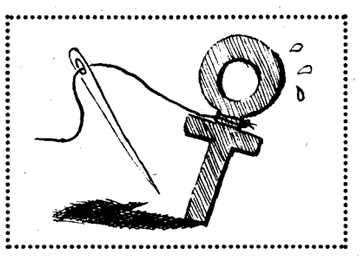

싸움을 해야야만 하는 여성들에게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이다.

만약 법적·제도적 조치로서 여성고용을 의무화해 강력히 감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혹자는 제도적 조치로 보호를 받으려는 그 자체가 여성들 자신의 의존성을 스스로 내보이려는것이 아니냐고 비아냥 거릴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데 생각이 기우는것은, 이제 사회 구조 자체가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등 표면적인 노력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 신도리코 등 4개 회사에 대한 고발조치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했을 뿐 법소송문제로 자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바람에 오히려 회사의 광고효과만 더해주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후문만 남긴채 별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문득 지난 29일자 본일간지 해외토픽이 생각난다. 미국 제2의 개신교인 연합감리교단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라는 '남성호칭'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논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하느님마저 성차별을 극복하려는 이마당에…"

세상은 이렇듯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사회의 남성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묻고 싶다.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섬유 — 메리노울

한결같은 트래디셔널 정신이 있습니다.

대학, 영원한 트래디셔널 정신의 산실

고대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전장에서 동족을 구분하고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엠블렘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전통, 영광, 가문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훌륭한 가문들이 그들 고유의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며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 온 세계의 유명대학들도 그들의 개교정신을 상징하는 엠블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블렘은 단순한 표식이나 상식이 아닙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오는 트래디셔널 정신의 상징인 것입니다. 캠브리지의 사자모양 엠블렘에, 아이버리그 대학들의 책모양 엠블렘에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정신이 베어 있듯이 우리 대학들의 엠블렘에도 진리와 자유라는 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세계의 대학들이 진리, 자유, 정의를 추구해온 것은 그것이 바로 트래디셔널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영원히 존재할 트래디셔널 —
세계의 대학들이 최고의 지성과 양심으로 지켜왔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이땅에 트래디셔널 남자옷 체계를 세우는 일 —
트래드클럽이 합니다.

매년 템즈강변에서 벌어지는 옥스브리지의 보트레이스 —
전통과 명예를 소중히 하는 영국인 전체의 스포츠입니다.

Trad Club
Traditional & Authentic for the Exclusive Men
"막 사입어도 일년 된듯한 옷, 십년을 입어도 일년 된듯한 옷"

(주)서울트래드클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전화 : (02)785-0491~4
• 서울 명동매장 757-1971, 2 • 롯데(백)명동점 757-1973 • 롯데(백)잠실점 413-0240 • 신세계(백)영등포점 679-3987 • 미도백화점 779-2369 • 뉴코아백화점 593-4446 • 현대백화점 546-0980 • 한무쇼핑 567-6414 • 미도파(백)청량리점 966-5475 • 삼풍백화점 591-5539 • 신세계(백)미아점 986-1991 • 쁘랭땅백화점 774-5111 • 한신코아백화점 971-8665 • 목산백화점 475-4800 • 대구 대구백화점(053)46-2932 • 동아쇼핑(053)254-1878 • 동아백화점(053)423-8760 • 부산 광복동매장(051)246-8752 • 태화쇼핑(051)819-0289 • 부산스파쇼핑(051)555-2743 • 부산백화점(051)557-0170 • 울산 주리원백화점(0522)44-3066 • 울산대리점(0522)44-2177 • 대전 대전백화점(042)252-7321 • 동양백화점(042)252-6120 • 마산 성안백화점(0551)41-8304 • 포항 대백쇼핑(0562)81-5076 • 전주 코아백화점(0652)87-9591 • 경주 신라백화점(0561)43-3091 • 인천 인천백화점(032)762-5427